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이해관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인 구분			
발급·열람 대상 자동차	등록 번호(또는 차대 번호)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자동차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 내용	발급		갑부 []부		을부 []부		
	열람		갑부 []		을부 []		
발급·열람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2항·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호
지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함)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신용인 용용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1.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1부)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압류 등록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없음	없음

유의 사항

1. 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2. 신청서의 기재 사항 중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 요령

이해관계인 구분 칸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저당권자, 압류채권자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m²]